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등 비공개 요건 마련〉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358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화실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3
3. 관계기관 의견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4명
2. 제 안 일 : 2024. 12. 10.
3. 회 부 일 : 2024. 12. 11.

II.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면 행정절차의 근거 또는 기준 등이 변경되어 대부분 국민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부 행정기관이 소관 행정규칙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제·개정 여부를 비공개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소관 행정기관이 법령등의 제명 자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규정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법령등의 규율을 받게 됨.

III. 주요내용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법령등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제명은 공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제3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IV.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¹⁾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제명을 제외하고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생략)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u><신설></u>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등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공개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③·④ (생략)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비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의 제명은 공개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행정기본법」 제38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²⁾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는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도록 하

1)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2) 「행정기본법」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법령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③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있음.³⁾

이에 따라,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훈령·예규등(이하 “행정규칙”)⁴⁾의 제정·개정·폐지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⁵⁾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⁶⁾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다만, 행정규칙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⁷⁾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정보시스템에 등

3)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8조(행정의 입법활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

5) 제4조(법령정보의 수집)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이하 “행정규칙”이라 한다)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행정규칙 전문(全文)

2. 조문별 제정·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

④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등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6)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

록하지 않되, 행정규칙의 제명과 비공개 사유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수범자인 국민이 행정규칙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는 공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2022년 ~ 2024년 3년간 각 부처가 비공개한 행정규칙의 수는 연평균 약 230건으로, 부처별로는 국방부(2024년 57건)·대검찰청(2024년 53건)·우정사업본부(2024년 29건)가 비공개 행정규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⁸⁾ 비공개 사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비공개 행정규칙 현황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시한 경우가 2025년 3월말 기준 206건 중 94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⁹⁾

국민이 내용을 알 수 없는 비공개 행정규칙이 늘어나고, 비공개 행정규칙의 제·개정으로 행정의 절차 또는 기준이 변경되어 국민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은 수범자인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행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

(단위: 건)

소관부처	전체 규칙 ¹⁾	2022년 ²⁾	2023년 ²⁾	2024년 ²⁾	2025. 3월말
대검찰청	241	59	54	53	53
국방부	292	60	57	57	57
우정사업본부	155	31	30	29	29
관세청	219	16	16	12	12
법무부	330	11	13	13	13
통계청	1,393	8	7	6	6
해양수산부	1,318	6	0	0	0
해양경찰청	371	9	9	8	8
국세청	184	5	4	3	3
외교부	175	6	6	6	6
그 밖의 부처	14,494	47	28	20	19
합 계	19,172	258	224	207	206

주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소관부처별로 등재된 행정규칙 건수(2025. 4. 10. 기준)

2. 각 연도 말 기준

자료: 법제처

9) 비공개 행정규칙 비공개 사유 현황

(단위: 건)

비공개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건 수*
제9조제1항제1호	3
제9조제1항제2호	94
제9조제1항제4호	51
제9조제1항제5호	17
제9조제1항제6호	1
제9조제1항제7호	29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5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2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3
합 계	206

주: 건수는 2025년 3월말 비공개 행정규칙 목록 기준

자료: 법제처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예외적으로 국가기밀에 해당하여 공개 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제명을 제외하고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행정규칙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다만, 이 법의 정의상 “법령등”¹⁰⁾에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 뿐 아니라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도 포함되는데, 개정안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현재 제·개정시 예외 없이 공포(관보 게재)하도록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¹¹⁾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경우에도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통해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가 신설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다른 법률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0)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11)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①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개정안은 법령등의 비공개 사유를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공개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¹²⁾은 그 외에도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곤란하게 하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비공개 사유가 다소 협소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관계기관 의견

법제처는 국가기밀임을 이유로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법령등을 비공개하는 경우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령등의 내용을 수범자가 알 수 없어 공포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고, 헌법 제53조¹³⁾,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법률 및 법규명령의 공포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감사원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현재도 국민에게 제·개정사항을 알리고 있어 별도 규정을 신설할 실익이 없고,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를 위한 훈령·예규·지침은 감사기법 등 내용이 포함된 일부 비공개 규정까지 제·개정사항을 공개할 경우 감사활동 전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13)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무부는 「행정기본법」에 따른 “법령등”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고,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 재판, 감사, 인사관리에 관한 행정규칙이 공개되는 경우 법집행기관의 직무 수행이 곤란해지거나 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한 법령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현행법 하에서도 법령 등은 대부분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임.

법원행정처는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공개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국가기밀에 관한 법령등의 제명을 공개하는 경우 법령등의 내용이 간접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임.

국정원은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행정규칙의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비공개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국회에 공개하는 것은 모순이며, 국회의 행정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행정기관의 재량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비공개 행정규칙이 많고, 국민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할 규칙임에도 법제처장의 비공개 내규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벌칙 등 강제조항을 신설하거나 행정규칙을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 현행 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어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54